

영등포구의회  
제14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8. 11. 6.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구애라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개정이유

-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법제명과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임.

## ■ 개정내용

-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로 변경(안 제1조 중)
-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변경(안 제12조 제1항 중)
-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변경(안 제21조제2항 중)

## 검토의견

-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특허법이 발명진흥법으로 지방 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인용 법률명과 조문번호가 변경되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고 영등포구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속히 상위법령 등에 맞추어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11. 6.

보 고 자 : 권 오 운

# 관 계 법 령

## 【관계법령】

### □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시행일:2007.6.29]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이 다음 각 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등에 대한 보상기준의 제시 상황

3.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③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공부등록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부동산 그 밖의 권리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공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다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감"으로 그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添記)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행정국) ①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를 둔다. <개정 2007.07.26>

②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임하고, 각 과장 및 여유기구인 주민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임한다.<2007.07.26>